

2026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한 농촌특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2026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농촌관광 공동협의체는 2026. 2. 6.(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3일

제주시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250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농촌특화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 상품개발, 상품운영, 상품고도화, 프로그램 관리, 자문 및 컨설팅, 홍보·마케팅, 인건비 ※ 지원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2026년 추진방향 >

- 1년차 운영상품 고도화(4건) 및 참여마을 법인화·자립화 지원(수요조사)
- 동·서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상품 추가 개발 4건(동부 2건, 서부 2)
 - ※ 지역 상권(렌트, 숙박 등) 연계 워케이션 통합 패키지 상품 개발 필수
 - ※ 지역축제 연계 및 K-푸드 활용 등 테마로 하는 상품 신규 개발 필수
- 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반 지원 사업비 필수 편성(상품고도화비)
- 지역주민(경영체) 대상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 추진(반기별 1회)
- 지역주민(경영체) 간 네트워킹 데이 운영으로 소통 활성화(격월 1회)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달성도, 사업비 집행실적 포함) 점검(월 1회)
- 2년차('25~'26) 사업 성과 분석(문제점 및 대책 등), 향후 발전과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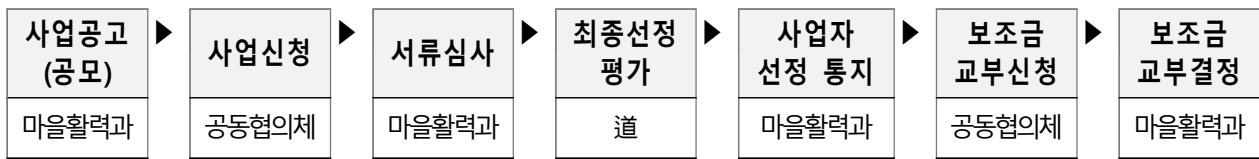
II. 사업신청

- 신청대상: 관내 농촌관광 공동협의체
 - (농촌관광 공동협의체)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과 ‘여행전문가(조직)’가 구성한 공동운영지원조직 ※ 자격요건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고
 - ※ (신청자격 제한)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고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 신청기간: 2026. 1. 26.(월) ~ 2. 6.(금) 18:00
- 제출서류: 신청 서식 참고(별첨)
- 제출방법: 방문 혹은 전자우편(cnr2013@korea.kr)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5, 제주시청 6별관 3층 마을활력과
- 문의사항: 제주시 마을활력과 ☎064-728-2861~2

III.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내용
 - (정량) 참여조직 경영상태, 전문인력 보유현황, 업무수행 경험 등
 - (정성) 사업계획성, 지역성, 상품성, 운영전문성, 지속가능성, 집행 적정성, 안전성 등
- 평가방법
 - (정량) 제출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제주시에서 평점 부여
 - (정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 5인 이내로 구성, 심사 항목별 평가내용 참고하여 발표심사·평가
 - ※ 발표심사: 2. 10.(화)
- 대상자 선정
 - (순위결정) 최종 평점이 높은 순위대로 결정하되, 동점자 처리는 서면심사, 가점 순서로 고득점을 받은 순으로 순위 결정
 - (대상선정) 고득점을 받은 순으로 결정하되, 적격여부를 종합 검토 하여 최종 사업대상자 1개소 선정
 - ※ 사업대상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변경
 - ※ 사업선정 세부기준 (붙임3) 참고

- 결과 발표: 2026. 2월 중



IV.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서 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지원 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 사업 최종 선정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 결정 전 집행액은 모임 자체 경비로 처리
- 접수 마감까지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항목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직접비(총사업비의 70% 이상), 운영경비(총사업비의 30% 이내)로 구분하여 집행하며, 직접비 내의 항목은 필수항목 없이 선택적으로 집행 가능
 - 직접비 내 상품운영비, 상품고도화비, 프로그램 관리, 컨설팅, 홍보마케팅 각 항목은 직접비의 50%를 넘지 않도록 집행
 - 최대 지원율 : 상품운영비 50%, 할인판매 50%, OTA 수수료 30%
 - 지원제외항목 : 시설, 기계장비 등 자산 성격인 하드웨어 설치 및 구입비, 타부처 및 지자체 사업 중복지원 사항 등
- 사업비 예산 편성·집행,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및 정산 방법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했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름

[붙임1] 지원내용 세부사항

○ 지원내용

- (상품개발) 여행전문가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경영체¹⁾의 기존 관광 상품을 지역축제, K-푸드 등의 테마로 연계하여 새롭게 콘텐츠화²⁾³⁾
 - 1) 농촌관광 경영체: 농촌체험휴양마을, 융복합인증사업체(관광중심),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가맛집, 찾아가는 양조장 등
 - 2) 지역축제 연계 및 K-푸드 활용 등 복수의 테마를 개발하여 상품구성이 가능하며, 상품은 반드시 소규모형(가족단위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3) 자가용 이용자 타겟의 드라이브형 코스,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힐링·휴식 테마, 당일형은 맛집 중심, 숙박형(1박2일 등)은 체험 중심의 상품 개발을 중점 추진

[상품개발 방법]

- 축제연계상품 : 지역 고유성을 가진 축제·행사·특산물 등을 테마로 농촌관광 경영체의 상품·콘텐츠와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구성
- 테마상품 : 지역의 고유가치와 지역관광자원 연계하여 농촌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창조적인(creative) 테마를 발굴하여 관광상품을 구성하되, 지역 내 일반관광지 포함이 가능하며, 계절별·타겟별 복수 테마 개발 가능

[상품 구성방법]

- 농촌관광 경영체 상품 중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공하는 상품(체험·식사·숙박 중 선택 가능)을 반드시 포함하여 상품 구성(상품당 1개소 이상)
* 개발된 상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 이상(복수의 상품에 포함된 마을 수 합산 가능) 포함할 경우 선정(서면평가) 시 가점 부여

- (상품운영) 개발한 관광상품에 대한 상품가격* 책정, 모객계획 수립, 상품 유형별** 모객활동, 프로그램 운영, 안전대책 수립*** 및 고객관리(CS)
 - * 상품원가 및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책정
 - ** 당일/1박2일/2박3일, 단체관광/소규모(개별)관광 등
 - *** 관광객 여행자보험 가입, 안전 지도, 현장 안내, 안전사고 발생 시 사후처리 등
- (상품고도화) 개발된 테마상품 등에 포함된 개별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반 지원
 - 예) 체험: 운영자 유니폼 / 숙소: 침구류, 어메니티 / 음식: 식기류
 - 회계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은 집행 불가
-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고객·경영체 관리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항목*에 대한 지원
 - * 테마상품의 원활한 판매·운영을 위해 관광경영체 간 협업, 상품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유지비 등
- (자문 및 컨설팅) 관광상품 구성, 판매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 * 전문가는 지자체 주관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관광두레 등 지역의 인적 자원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분야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할 경우 공사에서 전문가 풀(pool) 제공 가능
 -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시범운영(인플루언서 패트워, 서포터즈 등),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및 여행플랫폼 등을 통한 판로개척, 테마 관련한 굿즈 디자인 기획 및 제작비, 리플릿 및 브로슈어 제작비 등 모객을 위한 상품 판매 전략 및 마케팅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
 - (**인건비**) 중간지원조직(주관*)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 * 중간지원조직 구성원 혹은 별도의 계약(고용)을 통한 인원으로 이력(경력)을 고려하여 산정(최저임금 이상,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이하)하며, 지자체에서 기준 관리

[붙임2] 자격요건 세부사항

- **자격요건**(각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¹⁾과 여행전문가²⁾가 구성한 공동협의체(협력 네트워크)
- 1) 중간지원조직:** 전국·시·도(시·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지방공기업(관광공사 등), 지역문화재단, 관광두레*, 청년단체**,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NGO, 6차산업 지원센터, 기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직***

* 관광두레사업 참여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주민공동체 조직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

*** 도내 소재한 법인으로써 농촌관광 사업추진 실적(경력) 있는 단체(사업수행 실적 금액 1천만원 이상)

※ 개별경영체인 체험마을, 6차산업인증업체 등은 불가

※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농식품부),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개발사업(농식품부), 또는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농식품부), DMO육성지원사업(문체부)에 참여 경험이 있는 중간지원조직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경력자(1년 이상)가 참여하는 경우, 선정(서면평가) 시 가점 부여

2) 여행전문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관광사업자(관광사업등록증 필수)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여행사 등

* 여행상품 예약·결제·판매 등이 가능한 플랫폼(자체 홈페이지, 네이버 플레이스 외) 등 보유 필수
- 공동협의체(운영조직)는 법인이 되, 사정에 의해 그렇지 못 할 경우 사업계획 및 공동규약 등을 만들고 공모 신청 이전에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야 함

* **업무협약서(공동규약서):** ①협의체명, ②참여 및 대표법인명, ③대표자, ④목적, ⑤참여주체별 구성원, ⑥협의체 구성(조직), ⑦역할과 책임, ⑧업무분장, ⑨업무 추진 및 관리 방안, ⑩상호 협력 방안, ⑪사업비 집행 및 정산, ⑫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협약 내용은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에 반영, 기본적인 협약내용 누락 시 감점(업무협약서는 자율형식에 의하며, 최종 선정 이후 필요에 따라 법무법인을 통한 공증 진행)

[붙임3] 사업 선정 평가 세부기준

○ (정량평가)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배점 | 평가 점수 |
|---------------------------------------|--|--|-------------------------|
| 참여 업체 경영상태 (여행전문가조직)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재무구조) 평가 | 5 | |
| 참여조직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중간지원조직·여행전문가) | - 사업 관련 학위 및 유사 사업 참여 인력 확보 * 공고일 기준 해당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을 평가대상으로 한정 (4대보험 가입 명부로 재직 확인) | 5 | |
| 참여조직의 업무수행* 경험 (중간지원조직·여행전문가) | - 유사사업 수행 실적(건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1천만원이상 실적 건수 합산 | 5 | |
| | - 유사사업 수행 실적(금액)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1천만 원 이상 실적 금액 합산 | 5 | |
| 소 계 | | 20 | |
| 가 점 | 농촌관광사업 참여 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 (농식품부)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개발사업,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등 참여 경험 - (타부처)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지원사업, 청년마을, 로컬크리에이터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참여 경험 등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경력자(1년 이상) 포함 | (0.5) (0.5) (0.5) |
| | 상품에 포함된 체험마을 개소수 (복수의 상품 합산 가능) | - 2개소 이상 | (0.5) |
| | 자부담 여부 | - 자부담 동의서 제출여부 | (0.5) |
| | 인구감소지역 여부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지 여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행안부) | (0.5) |
| | 가 점 계 | | (3.0) |
| 감 점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안내사항 준수 여부 | - 업무협약서 기본협약내용 누락 | (-0.1) |
| | | - 계획서작성·제출관련 안내사항 위반 및 불성실한 경우 | (-0.1) |
| | | - 증빙자료 작성·제출관련 안내사항 위반한 경우 | (-0.1) |
| | 감 점 계 | | (-0.3) |
| 합 계 | | 23 | |

– 참여업체(여행전문가) 경영상태 평가 기준(5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5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3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해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참여조직*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평가 기준(5점)

| 평가구간 | 전문인력 보유현황* | | | | |
|------|------------|------|------|------|-------|
| | 8명 이상 | 7~6명 | 5~4명 | 3~2명 | 1명 이하 |
| 배점 | 5 | 4 | 3 | 2 | 1 |

* 참여조직 : 중간지원조직과 여행전문가 등 공동협의체 소속에 실제 참여인원 합산

** 전문인력 대상 : ①관광·홍보·경영 등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소지자, ②관련 자격증(공인자격) 소지자로 관련 경력 1년 이상, ③유사사업 관련 경력 2년 이상 (기타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인정 여부는 각 시·도의 권한이며, 각 시·도는 관련 자격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유사사업 : **여행상품 기획 및 운영, 홍보** 등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실적 증명(계약서, 정산결과보고(공문) 등)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기타유사사업 인정 여부는 시·도의 권한이며, 시·도는 유사사업(여행상품기획·판매, 관광·홍보·축제)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동참여 수행 실적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 금액이 1천만원(VAT포함) 이상 사업 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합산 가능)

– 참여조직*의 업무수행 경험 평가 기준(10점)

< 수행 실적(건수) >

| 평가구간 | 수행실적 1천만원(VAT포함) 이상 사업 수행 건수 | | | | |
|------|------------------------------|------|------|------|-------|
| | 8건 이상 | 7~6건 | 5~4건 | 3~2건 | 1건 이하 |
| 배점 | 5 | 4 | 3 | 2 | 1 |

< 수행 실적(금액) >

| 평가구간 | 수행실적 총 사업금액 | | | | |
|------|-------------|---------------|---------------|---------------|--------|
| |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배점 | 5 | 4 | 3 | 2 | 1 |

* 참여조직 : 중간지원조직과 여행전문가 등 공동협의체 소속 개별 실적 건수 및 금액 합산

※ 유사사업 : **여행상품 기획 및 운영, 홍보** 등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실적 증명(계약서, 정산결과보고(공문) 등)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기타유사사업 인정 여부는 시·도의 권한이며, 시·도는 유사사업(여행상품기획·판매, 관광·홍보·축제)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동참여 수행 실적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 금액이 1천만원(VAT포함) 이상 사업 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합산 가능)

○ (정성평가)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배점 | 비고 |
|----------------|--|---------------|----|
| 계획 적정성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부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방향성, 내용 등의 부합 정도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타겟팅·니즈 파악에 따른 사업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네트워크 활용방안, 협약 내용의 실효성, 사전 준비 활동, 협의체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 | 10 10 5 | |
| 지역성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대한 이해도 및 지역자원 활용 방안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색 및 고유 가치에 대한 이해 수준 및 분석 노력도 -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차별성 및 구체성 ○ 지역 가치 창출 및 지역 경쟁력 제고 방안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일자리 창출 및 관계 인구 증대, 지역 방문객 유도 등) | 10 10 | |
| 상품성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상품 구성의 참신성·매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자원과 농촌관광 자원 연계를 통한 테마상품 구성 | 20 | |
| 운영 전문성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홍보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별 운영계획 적정성 등(인력투입 계획, 고객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예약 시스템 운영, 전문가 자문·컨설팅 계획 등) - 홍보 대상, 방법, 내용 등 모객을 위한 홍보 계획의 적정성 ○ 방문객 응대를 위한 대비 수준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판매·운영에 참여하는 경영체 대상 응대 요령 교육 및 관련 매뉴얼 유무 등 대비정도 | 10 5 | |
| 지속 가능성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성 및 환경변화 대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 종료 후 상품 운영 방안, 지역 관광 브랜드 구축 가능성 및 중장기 전략 등 ○ 성과확산 및 타 사업 연계 방안 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경제활성화지원사업 및 타 부처 사업 연계 방안 | 5 5 | |
| 집행 적정성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세부 집행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집행계획과 사업내용의 연계성 및 적정성 | 5 | |
| 안전성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상의 안전 확보 정도 및 비상시 대처방안 적정성 | 5 | |
| 합 계 | | 100 | |